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해설(中)

홍 종 민 /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목 차〉

Ⅰ. 안전관리비의 제정 배경
Ⅱ. 연역 및 법적 근거
1. 연역
2.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Ⅲ.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1. 주요내용
2. 고시내용 해설
1) 용어 정의
2) 적용범위
3) 공사의 분류
4) 계상기준
5) 계상의 시기
6) 수급자의 의무
7) 사용기준 (별표 2, 3, 4)
8)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9) 안전관리비 사용의 확인
10)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Ⅳ.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 불이익
1. 안전관리비 중점 점검사항
1) 미계상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2) 위반항목 집계 및 확인서 징수
3) 의견진술
4)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Ⅴ. 참고 자료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등	○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기본급의 10% 이내) – 건설용 리프트 ·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멘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의 안전 담당자 지정작업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 – 표준 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 방지 방책 등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 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테릭 등의 권과방지방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신호수용 반사조끼, 용접용 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등 유해작업장 환경 측정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 자체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사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행사비(년2회 이하), 포상비, 각종 서식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등	○ 구급 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10% 이하

주)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확·포장, 철도보수공사 등), 자재정리 및 폐자재 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
–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냉온방 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등)
–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의 합계는 150% 이하이나 이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100%를 사용하라는 것이며, 해당 항목별로 제한된 사용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음

〔별표 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20%	40%	60%	80%	100%
사용기준	20%이상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별표 4〕 기술지도 수수료 기준

기술지도구분	수 수 료
정기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전담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5% 이하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예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등	○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기본급의 10% 이내) – 건설용 리프트 ·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안전 담장자 지정작업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조정 30%)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 방책 등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조정 10%)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 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테릭 등의 권과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가설전기 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신호수용반사조끼, 용접용 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조정 10%)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조정 10%)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등 유해작업장 환경 측정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 자체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사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행사비(년2회 이하), 포상비, 각종 서식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조정 10%)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조정10%)
계		150%(조정 100%)

〈예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등	○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기본급의 10% 이내) – 건설용 리프트 ·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조정 40%)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조정 20%)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 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테릭 등의 권과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신호수용 반사조끼, 용접용 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조정 10%)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등 유해작업장 환경측정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 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5. 안전보건 교육비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 자체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팸플릿,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사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행사비(년2회 이하), 포상비, 각종 서식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조정 20%)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구급 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조정10%)
계		150%(조정 100%)

8)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외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목적 외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공사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경영상 수지상의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공사현장에만 투입을 하고 별표 2의 기준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법적 근거 참조

9) 안전관리비 사용의 확인

제10조(확인) ①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확인)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문업체 및 하도급자에게도 원청자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연결성 관계를 확인토록 함이다.

10)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제11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①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관리비를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행예산을 작성토록 하여 그 실행예산에 따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정

한 사용근거를 두기 위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 보존토록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행예산의 작성 또는 집행시에 안전관리자를 참여하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조언을 할 수 있도록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재해예방기술지도등

제12조(기술지도), 제13조(기술지도 계약), 제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 제15조(수수료) 등의 업무해설은 협회지 전호(통권 18호, 1995. 가을호)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산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친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	원 (안전관리비×공정율)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제출자 직책 성명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노동부고시 제1994-4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즉, 재해예방기술지도 등(제12조~제15조)은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분에만 해당되며 그 전에 계약된 공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3월 1일 이후 계약된 공사일지라도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년도 계약분이 3월 1일 이후에 계약된 공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